

# 2019년도 제25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자 : 2019. 11. 13.(수요일)
- 방 법 : 온라인심의
- 대 상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 심의위원 : 김경숙(분과위원장), 박재화 위원, 박정인 위원, 최현용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의결안건〉 ※ 안건 검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II. 회의안건 및 결과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회의안건: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63건(안건번호 제2019-145032호~제2019-145091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그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기로 의결함

### Ⅲ. 주요내용

- A 위원 : 해당 게시물들은 정당한 관리자가 아닌 자가 공중에 제공하고 있어 저작권법 제133조의 3 시정권고 요건에 해당함  
다만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된 경우 경고의 시정권고를 해야할 것임
- B 위원 : 안전번호 제2019-145032호 ~제2019-145091호(●●●● 사이트의 영화 크롤 2019등 63건의 게시물)과 관련하여 불법 복제한 영상 저작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은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 안전번호 제2019-145032호~145091호의 63건의 게시물은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D 위원 : 안전번호 제2019-145032호~145091호는 ●●●● 등 총 5개의 사이트에 게시된 '(영화) 크롤(2019)' 등 63건의 게시물들은 현재 인기있는 영상물들임. 이들을 온라인상으로 복제 전송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이용자들이 영리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웹하드에 복제 전송을 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바, 이는 합법적인 이용행위를 벗어나는 불법 이용행위에 해당함. 이에 불법 복제한 음악저작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은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2019년 제25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11. 13.

분과위원장 김경숙

위원 박재화

위원 박정인

위원 최현용